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50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박주현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348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E 사이에 주식회사 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 C, D과 E 사이에 각 주식회사 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E에게, 피고 A은 주식회사 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주식회사 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E에 대한 조세채권

서초세무서장은 E에게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16,650원을 납부기한 2019. 12. 31.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E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E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

1) E이 2018. 12. 1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121,8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에게 61,803주, ② 피고 B에게 20,000주, ③ 피고 C에게 20,000주, ④ 피고 D에게 20,000주를 각 증여하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각 증여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은 E의 아들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 피고 C, D은 피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E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E의 가족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A은 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설립 당시 E 명의로 인수된 15,000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의 소유이며, 피고 A과 E 사이에는 피고 A이 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는 인공각막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9. 6. 30.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액면가 5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발기인 G, H, E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당시 주식은 G에게 30,000주(1,500만 원), H에게 25,000주(1,250만 원), E에게 15,000주(750만 원), 인공각막 관련 기술 보유자인 I에게 30,000주(1,500만 원)가 인수 또는 배정되었고, 주주명부도

위와 같은 주식 보유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다.

② F 설립등기 전날인 2009. 6. 29. 피고 A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J은행 K지점에서 인출되고, H, E에게 각 1,500만 원이 송금되어, 합계 5,0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위 5,000만 원은 F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으로 F의 설립등기 사무가 이루어질 무렵 그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F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G은 'F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 A이고, 피고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출자금도 피고 A으로부터 받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발기인이었던 사실을 모른다. 피고 A으로부터 돈을 입금할테니 다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 A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F의 주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인 피고 A이 필요하니까 내 이름을 썼든지 한 것이다. F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의 위 증언은 피고 A의 예금거래내역, G의 사실확인서 등과 부합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E은 피고 A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F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에게 증여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E 명의의 주식은, F 설립 당시 인수된 15,000주에서, 2010년경 양수를 통해 20,082주, 무상증자를 통해 27,874주, 2016년 무상증자를 통해 58,847주가 각 증가하여 121,803주(= 15,000주 + 20,082주 + 27,874주 + 58,847주)가 되었다.

⑥ F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 A이 E을 포함한 발기인들과 I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 A이 명의수탁자인 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E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 A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E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E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중간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고진흥, 판사 성찬용